

제418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5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3)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3423)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4)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3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3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0)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4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4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4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4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4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4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회 제출)

-
- 4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8)
 - 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5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 5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 5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 54.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 5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 5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 6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 6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 6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 6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 6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
 - 6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 7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 7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 7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 7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 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 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7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7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8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8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8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51)
 8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9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9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9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9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9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8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9
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9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9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9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3)	9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	9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	9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	9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	9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	9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	9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7)	9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	9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5)	9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3)	10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	10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4)	10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33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3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4
3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34
3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40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40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40
3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0)	40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4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4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40
4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40
4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40
4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40
4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44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4
4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50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28)	50
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0
8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51
8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51)	51
8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1
8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2
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2
9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	52
9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52
9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52
5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56
5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	56
5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	56
54.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56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56
5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	56
5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6
5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6
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6

제출)	56
6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6
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56
6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56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56
6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56
6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56
6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56
6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56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8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56)	63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64
9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65
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65
9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65
6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71
7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71
7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71
7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71
7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71
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71
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1
7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1
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1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7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8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8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8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8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72
8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72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76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의결한 후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7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19일간 법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10월 25일 금요일에는 전체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는 피감기관의 해당 감사일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위원의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제출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신 요구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법안을 심사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살펴봤는데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간사 간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제 12시에 전달이 됐네요, 저희한테.

○**위원장 정청래**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청문회와 달리 국정감사 증인은 불출석 시에 위원회 의결로써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장 조항이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감 중에 있는 재소자나 또 현역군인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다 채택할 수가 있게 증언감정법 6조에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법사위 고유법안과 타 상위법을 심사 의결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처리해야 될 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3)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7)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3)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54)

(10시05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9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물 회수를 제한하고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착오공탁인 경우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등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용민·장동혁·박준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점, 판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판 지연 심화 등을 우려하여 판사 임용자격으로서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해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법원을 폐지하고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년보호사건은 현행과 같이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하되 나머지 가사사건들은 세종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조정하고, 법원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소위원회장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손 드신 위원님들 위주로 하시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토론하세요.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조직법 오늘 대안이 올라왔는데 전담법관 부분을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42조 2항에 전담법관에 대해서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를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는데, 전체 법원의 판사들의 경력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상 전담법관제를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법 발의 이후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5년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비록 제가 발의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다양한 의견들과 그다음에 통계자료들을 제가 좀 더 확인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전담법관이 도입된 이후로 임용되는 전담법관들을 보니까 매년 2명, 3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담법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경력 5년으로 낮추는 것과 보완해서 경력이 있는 그리고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에게 재판을 맡겨서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와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당초 안처럼 20년을 유지하든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15년으로 낮추든 어느 쪽이든 법사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취지가 법관 선발 진입 하한선을 당초 계획된 10년에서 5년으로 고정시키는 데 따라서 그에 대응해서 법조일원화 취지를 조금 더 보완·강화하기 위해서 전담법관 경력을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법관제도는 아시다시피 한 법원에서 정년 때까지 평생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20년 전담법관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년으로 이제 낮추게 되면 2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경력과 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법원으로 들어올 기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법조일원화 취지에는 확실히 더 부합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법원에서 그만큼 인사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숙제가 주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쪽이든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잘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년으로 낫다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법을 질의드릴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을 오늘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허위영상물, 소위 말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4항에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처벌 조항을 확장하는 건 좋기는 한데 단순히 저장, 그러니까 시청하는 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 지나치게 형벌이 확장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지금 아동법을 보면 이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는 ‘알면서’라는 고의조항이 사실 빠져 있거든요.

처장님, 나중에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해석상으로는 당연히 고의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법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해서 보다 처벌을 확대하거나 또 대부분의 시민들이 무고하게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 누군가가 파일을 보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다운로드돼서 그 파일을 소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딥페이크 영상을 누군가가 보냈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다운로드받아서 소지하고 있고, ‘이게 뭐지?’ 하고 시청했다가 처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것은 알면서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 주십시오. 처장님부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소위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형태를 과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처벌해야 될지는 고의 입증하는 수사관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넣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법 적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철래** 김용민 위원이 제기한 문제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 위원장 보고한 것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의 20년을 15년으로 하자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위 딥페이크 관련 법인데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봤는데 그것까지 다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 상식으로 보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그거를 구별하는 데, 입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재판에서도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입증책임은 사법기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2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어제도 그와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의를 가지고, 이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소지·시청·판매·광고 등을 할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고의와 알면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장관 말씀처럼 이게 알면서 고의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게 명확히 법안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우선 논의 과정 속에 그 내용을 다 녹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니 저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에 관해서는 이 대상이 가해자도 10대가 75% 정도 되고, 피해자도 65% 정도가 10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르르 몰려서, 어른들은 당연히 이것을 절도 있게 구분해 내는데요. 아이들은 ‘이걸 같이 안 본 너는 우리에서 왕따야’라든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우르르라고 하는 문화와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 피해자가 많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좀 구체적으로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법조문에는 넣지 않는 것이 체계상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만, 그동안 아청법에도 그리고 n번방 사건 때도 알면서, 고의로라고 하는 부분이 법체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아주 진화하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 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피해자들을 너무 많이 양산하는 것보다 정말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일을 하고 고의로 하는 자들을 먼저 처벌하고 그런 장을 연 자들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경력에 대해서는 김용민 의원안이 법원 쪽에서도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른 위원님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김용민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서 다소 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소위에서 어제 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20년으로 전담법관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다만 논의된 과정은 그러니까 서술·

기술 형식이 마치 전담법관 지정하는 형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문구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에서 20년이라고 해서 다 논의했고 합의를 다 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을 갑자기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이 좋으냐 15년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법원에서 운영하는 형식, 제도 운영의 모양, 인력 운영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검토할 문제지 여기서 갑자기 기한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어제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법원에서 그런 의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것은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알면서도’라는 용어를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알면서도라는 개념이 바로 고의라는 얘기입니다, 고의로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정리한 겁니다.

법체계에서, 아첨법에 규정한 것은 사실은 소지나 시청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게 죄형, 형벌 비례원칙에 다소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법문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법 구조를 보면 그 구조 자체가 이미 고의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 자구의 명확성을 위해서 전문위원들 또 위원들이 다 그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법문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지 거기서 굳이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과실범이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법문 자체가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취지나 하면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사건이 됐을 때 당사자는 대부분, 요새 무슨 사고만 나면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이다 그래 가지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실제로 몰랐는데 우연히 받아 봤더니 있더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과연 그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전에도 딥페이크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단속됐을 때 고의로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1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수사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설명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지, 법문에서 법문 구조 자체가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게 돼 있는 법문 규정 형식입니다.

저희들이 소위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위원장께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논의했던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철래** 이것은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아첨법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게 법문 규정 형식이 이상한 거예요.

○**위원장 정철래** 아첨법에는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에는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범 간사님 말씀은 이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한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의범만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아첨법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다른 법에서는 문구가 달라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해석의 여지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통일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 보면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위원장 정청래** 일단 전문위원……

○**유상범 위원** 그래서 고의법만 처벌하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알면서’가 들어가야 되지요. 모른다니까요.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 의견을 좀 들어 보자고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모든 행위에 다 ‘알면서’를 넣어야지.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찬** 어제 논의 과정에서 14조의2의 규정도 사실은 14조의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향하고 내용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이라고 맞추어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7년도 17대 국회 때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때 제가 4명 중 1명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5명으로 하고 대통령이 속한 당, 다시 말해 여당이 위원장을 하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 야당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합의제를 해라 그래서 그때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기구가 거의 장관급으로는 처음 출범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5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차저차 이런저런 사유로 2명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쟁과 시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개정안 내고 하는 법을 그때 오히려 해 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조항이 그런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넓어서 사법기관에서 기관별로 좀 다르게 해석하고 이러면 같은 범죄에 대한 다른 법 적용 또 다른 처벌 또 양형도 다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승원 소위원장님.

○**김승원 위원** 어제 안 그래도 ‘알면서’ 규정을 갖고 굉장히 많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알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첨법에 ‘알면서’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것은 성폭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불법촬영물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제 개정했던 허위촬영물, 딥페이크 촬영물이 있는데 불법촬영물에는 ‘알면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개정안에 ‘알면서’를 넣으면 그러면 기존의 불법촬영물은 ‘알면서’가 없으니까 모르고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받는 게 아니냐라는 반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법조인으로서는 유상범 간사님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것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허위영상물임을, 딥페이크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본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걱정·불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국민 서비스 차원이라면 ‘알면서’를 넣는 게 마땅하되 지금 성폭법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알면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또 통일시켜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맞추는 쪽으로 하되 딥페이크 법에 대해서는 아직 쟁점이 남아 있어서 11월 달에 다시 법안1소위를 열어서 할 텐데 그때 통일되게 ‘알면서’를 넣어야 될 조항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다 면밀하게 해서 통일된 법체계를 그때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지금 김승원 간사가 얘기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성폭법 14조의2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알면서’를 넣잖아요? 그러면 위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여기도 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알면서’를 넣는 것으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알면서’를 넣으면 관련된 조항에 다 ‘알면서’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일시키려면?

그러면 이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딥페이크 관련된 법조항의 쟁점이 몇 개였어요, 어제?

○김승원 위원 어제 13개가……

○위원장 정청래 13개인데 몇 개까지 심사했지요?

○김승원 위원 7개까지 합의가 됐고요. 여덟 번째부터……

○위원장 정청래 7개까지는 합의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된 것 아니에요?

○김승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늘 통과시키는 것도 쟁점이 된 것을 지금 다 처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김승원 위원 예, 일부 합의만 담은 대안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시간이 부족해서?

○김승원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쟁점이 되는 것 대여섯 개를 여기에 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알면서’ 부분도 좀 더 심사하고. 나머지 부분 쟁점을 아직 다 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딥페이크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왜 이러이러한 조항은 안 넣었느냐, 왜 이러이러한 조항은 심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알면서’까지 통일할 건지 말 건지까지 심사를 해서 그때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약 이삼 주 정도 늦어질 수는 있는데 한꺼번에……

○유상범 위원 이삼 주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11월입니다. 아마 11월 셋째 주 정도나 돼야 가능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법사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딥페이크 법안이 일반 음란물, 일반 촬영물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처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적으로는 딥페이크물에 대한 처벌이 일반 음란물에 비해서 더 경미하게 처벌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합의했는데 그것조차도 뒤로 미루어 버리면 법사위에서…… 다른 논란들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좀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일부 합의된 것을 뒤로 미루어 버리면 곤란하고 이미 시행시기를 저희가 즉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 논의해서 바로 개정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딥페이크 관련된 여가위 법 3개도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숙려기간을 생략하는 것을 의결하고 통과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쟁점 사항을 아직 타결하지 못한 것이 이미 한 5개 정도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은 ‘알면서’를 넣을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가서 다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하고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것까지 통과시키고……

○유상범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나 쳐장님이 그때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아니, 어차피……

○서영교 위원 ‘알면서’를 넣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하지요. 일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를 시키되 ‘알면서’ 부분은 특별히 다음 5개 쟁점을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재논의하고 일단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15년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15년은 그냥 받아들이시지요.

○김용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법이 발의가 돼 있어야 돼요. 법이 발의 안 돼 있으면 이것을 논의해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또 하시면 되지요. 개정안을 내세요, 김용민 위원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 이런 것 다 논의를 하고 나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김용민 위원 아니, 지금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하시는 데……

○유상범 위원 저분이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지요.

○김용민 위원 이럴 때는 발의자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이……

○유상범 위원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5년이나 20년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3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전 담법관 법조경력 요건을 15년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신임법관 법조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조금 강화하면서 그것하고 간격을 좀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경험의 없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에서 15년으로 다시 환원시키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법관들과의 인사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사위에서 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를 맞추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어느 쪽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크게 상관이 없고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시기로 하지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이 더 중요한데, 이것은 만약에 15년으로 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통과 후 공포하고 몇 년의 유예기간도 있고 그럴 테니까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법안을 내시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나 김용민 위원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것만 갖고 토론하라 그랬는데, 어떻든 앞에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시가 급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여가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8건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신고해 봐라 그랬더니 수만 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와야 수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신고를 하려면 피해자가 마음을 굳게 먹고 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하는 게 제가 들을 때만 해도 15일 전 정도에 8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수만 건이 들어오고 있고요.

10대들 중에 가해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 아무도 나를 수사 못 해. 왜? 우리 금방 이 방 파기하고 갈 거거든. 아무도 날 못 쫓아와’ 이렇게 하는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리고 늦추고 할 겨를이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은 당정이, 국민의힘도 다 했고 우리도 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새로 해결 볼 건 보고.

그다음에 오히려 전담법관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다음에 해도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소위에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고.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어제 계속 다른 의견이 있었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혹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위원장 정청래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20년 제도를 좀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차원에서 낫습니다마는 제가 15년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재판 지연 사태 그리고 내년도에 신임 법관 선발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관 선발에 직결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좀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때문에 저희들이 경력에 대해서는 15년, 20년에 대해서 유연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꼭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위원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알면서’를 넣어서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딥페이크법 관련해서 법안이 수십 건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심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양 간사님들한테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심사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여가위에서 통과돼 올라온 세 가지 법은 숙려기간이 안 됐는데도 이것까지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시급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법을 제쳐 놓고.

그런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정비해야 될 부분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여기에 법을 못 담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시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 할 때 ‘알면서’ 이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 것을 또 미루자니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까지 된 것만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늘 저희가 처리한 이 법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거예요.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된 법 개정을 다시 11월 달 본회의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또 1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돼서 통과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남겨 둔 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논의하셔서 가능한 오늘 집어넣고, 이게 ‘알면서’라는 걸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여당 위원님들한테 진짜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딱 보면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딥페이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라는 고의성을 분명하게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불법촬영 영상물인지 딱 보면 아십니까? 몰라요.

○**곽규택 위원** 이것은 여야 간의 쟁점은 아니잖아요, 지금.

○**김용민 위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고유의 판단 문제지.

○**김용민 위원** 봐 봐요. 누군가가 카톡으로 어떤 영상을 보내요. 우리 의원들도 누군가 카톡으로 영상 보내면 자연스럽게 자동 다운로드돼서 봅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물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요. 그 영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집어넣어 줘야 불필요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 유상범 위원** 아니, 변호사이시면서 그 많은 걸 다 알면서 그래요. 고의를 그렇게……
-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여쭤보잖아요. 딥페이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할 겁니다. 못 해요.
-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의만 처벌하는 거예요.
- 김용민 위원**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는 ‘알면서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운받는 순간 소지라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여기서도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왜 방치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어요.
- 김용민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입니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보세요.

우리가……

- 김용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 위원장 정청래** 아니, 보세요.
- 김용민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더 말씀드리면, 지금 법원조직법도 15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능한 발의자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발의자가 종합적인 사정 고려해서 15년이 맞다라고 평가를 다시 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도 15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정청래**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뒤에 처리할 법이 너무 많아서 의사진행이 지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0리를 가는 것이 목표인데 물리적으로 오늘은 10리밖에 못 가요. ‘20리를 가야 됩니다. 아니면 10리 가는 것도 포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섯 가지 쟁점을 다 심사하지 못했어요. 그걸 다시 심사를 해야 돼요, 시급하게. 그때 이 부분을 넣어서 다시 하자는데 ‘오늘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안 되는 게 더 손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곧바로 다시 법안심사소위 해서 나머지 미해결한 부분도 다 해결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걸 하자는데 그것을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꼭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15년이냐 20년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5년으로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시급한 문제지 15년으로 하냐 20년이냐 하는 것은 덜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15년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회의 진행을 얘기하시지만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러면 절대 이걸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 곽규택 위원** 오늘만큼은 정청래 위원장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

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허위영상물에 대해서 빨리 처벌하는, 형량을 올리자는 것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 말씀처럼 1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1소위에서 쟁점이 돼서 논의를 했는데 통과된 것으로 올라왔으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담법관의 경력도 20년으로 1소위를 통과했으면 그에 맞춰 가지고 전체회의에서도 일정은 통과를 시키고 정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질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1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오늘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법원조직법 관련해 가지고는 더 중요한 쟁점들이 많고 과연 1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됐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클러의 문제라든지 로클러의 경력을 과연 5년 안에 다 포함시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전체회의에서는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소위에서 올라온 안들을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원조직법에서 10년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2011년도에 여야가 동수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법부 개혁안 중에 유일하게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10년 경력자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간 거거든요.

법원의 엘리트화 또 법원의 관료주의화를 막고 경륜과 경험을 갖춘 법관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10년 경력자를 선발하기로 했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10년 경력자를 선발할 경우에 법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5년, 7년 단위로 이걸 잘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로클러 제도를 받아주세요 해 가지고 로클러 제도 3년 동안 한 그 경력도 법조경력에 포함시켜 주기로 해 가지고, 이게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5년 경력으로 가겠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클러의 운영례를 보면 법관으로 선발되는 사람 중에 50% 이상이 로클러 경력자예요. 로클러 3년을 한 다음에 2년 정도를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하면 법관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로클러를 선발해 주면 ‘아, 이 사람은 나중에 법관으로 갈 사람’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되고, 거기서 다시 대형 로펌에서 2년 정도를 근무하다가 법관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법원에서 하도 법조인력의 수급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5년으로 줄이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 로클러를 3년으로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로클러 경력을 법조경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한 2년 정도 수준에서 하고 2년 정도 법원의 경험을 갖추고 그것보다 좀 더 긴 3년 정도를 변호사 경력을 갖추고 법관으로 들어와야 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는 법원 운영이 되는 거지 5년 중에서 3년을 갖다가 법관으로서 유사한 경력을 갖추고 2년

정도만 서울 시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조금 법조일원화 취지하고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로클럭 경력을 법조경력에서 빼자, 그것이 어렵다면 한 2년 정도로만 하자, 그것이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의견과 장관님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3년으로 줄여 달라는 것을 그나마 5년으로 지킨 겁니다.

○곽규택 위원 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김승원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3년으로 해 달라는 거였어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하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가 어제 소위에서도 조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로클럭, 즉 재판연구원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민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법관의 고령화라든지 또 재판 지연 상태 이런 부분이…… 그 관련해서 연구원 제도는 유기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제 유상범 위원님이나 또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년 안에 거기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토론하세요.

○곽규택 위원 장관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장관 먼저 말씀하시고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조일원화 제도는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법원에 사회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관을 뽑아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년에서 5년으로 갑자기 줄이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법원 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법조일원화 제도의 본래의 모습을 몰각하는 취지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연구원 제도 역시 10년이라는 이 제도에 맞춰서 설계된 것인데, 재판연구원 마치고 군법무관 갔다 오고 바로 임관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법조경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 지연 문제를 말씀하시는 데 재판 지연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사법시스템에 변화를 주셔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 들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오늘 법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밝혀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알면서’라고 하는 딥페이크 조항에 대해서는, 이 딥페이크 관련된 성폭법이 빨리 개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이 한 번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법은 그 자체로서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과시켜 놓고, 지금 저희들이 물론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저도 소위 위원입니다마는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견이 있고, ‘알면서’가 필요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추가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오늘 우선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빨리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를 해서 나머지 것들도 결말을 짓고 법이 완결성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즉시 시행된다고 돼 있는데 곧 시행을 하고 그것이 또 며칠 지나서 개정이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은 국회가 과연 입법활동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 국민들에게 과연 그것들이 입법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국회의 입법 작용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무게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20년 법조경력 있는 사람을 지금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10년에서 5년으로 바꾸면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오늘 통과가 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 이것이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재판지연의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경력 요건 자체가 저는 시스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다른 것들에 같이 연동해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공감하면서 20년 이상의 법조경력 한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의 경험을 특정 재판업무 영역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러면 그분들을 좀 더, 그 경력을 법원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과 맞추어서 저는 15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는 그러면서까지 반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도개선을 한다면 저는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은 15년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전에 위원님 말씀 조금 이따 하시고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아닙니다만 대략 위원님들 의향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미흡하고, 다음에 추가 개정을 하더라도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떤 분들이 더 많으신지……

내리시고요.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알면서’ 등등 해서 다음에 처리하자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세 분 정도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알면서’ 넣어서 오늘 통과시키는……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거지요. 그게 제일 핵심이지요.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토론하세요.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알면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범이기 때문에, ‘알면서’하고 ‘고의’는 결국 중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면서’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딥페이크로 편집된 것인지 아니면 원본인지 이건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불시에 카톡으로 올 수도 있고 문자로 올 수도 있고 열어 보게 되면 결국 당신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문제로 넘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열어 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지요.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는 수사를 계속해서 받거나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이 법을 보고, 이 좋은 법을 보고 그런 우려가 많이 생기게 되면 법 저항이 생길 겁니다. 그런 폐단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알면서’가 필요하느냐? 이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알면서’가 들어가면 이걸 실제로 일을 할 일선 경찰관들은 ‘알면서’라는 용어를 보고 ‘유의해야겠구나, 유의하라는 시그널이구나, 입법자가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아는 사람만 처벌해라 하는 취지를 여기 법에 담았구나’ 하는 명백한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고의하고 동일한 용어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한테 또 법을 해석해서 기소하는 검사들한테 입법자의 명백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라는 용어는 우리 법사위에서 꼭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년 이상 특정 재판사무 이 부분도 행정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될 특정 재판사무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금 현재로서는 민사 소액, 단독 그리고 올해부터는 형사 전담 법관제도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거나 또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법원에 가서 특정 사건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만 전담해서 계속 근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다면 결국 법원에서 하고 있는 재판사무 중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모든 재판사무가 중요합니다마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아닌 소액사건이라든지 단독 사건이라는 것을 경력이 많은 법조경력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을 활용, 인력을 활용해서 재판사무의 지연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영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밖의 재야 쪽에서는 전담법관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 없이

한 법원에서 평생 근무하니까 중간에 법관 이동으로 인한 재판 중단 사태도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가사라든지 신청이라든지 기타 영역으로도 저희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다면 20년 이상만 특정 재판사무에 임할 게 아니라 15년 이상 정도면 충분히 특정 재판사무를 맡길 만한 법조경력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법원이 경력자를 20년 이상으로 한정할 합리적 이유가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용민 위원님과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년 이상으로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딥페이크, 지금 성폭법 14조 2항, 4항 관련해 가지고, 규범이라는 것은 이 규범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딥페이크 피의자의 75.8%가 10대예요. 아청법에 ‘알면서’가 들어간 것은 그런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에서 의결된 부분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이 ‘알면서’ 부분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14조의 4항이 훼손되지가 않거든요, 법안의 의미가. 그래서 시급하게 오늘 딥페이크 법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청법과 동일하게 통일해서 ‘알면서’를 넣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조금 물겠습니다.

장관님, 2년 전에 법무부에 있었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은정 위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취임하자마자 그 TF 해산시키고 서지현 검사 원대 복귀 명령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구체적인 인사 과정은 모릅니다만 TF팀이 역할을 다해서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해산된 건 맞지요? 역할이 다 된 게 아니라 TF팀 11차 권고도 못 하고 해산이 돼 버렸거든요. 그 TF에서 고심해서 만든 그 권고안들도 대부분 폐기되고 법무부에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 TF 권고안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개별 내용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권고 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박은정 위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입법 추진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 이후로 국회에 와서 폐기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수용해서 반영한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법무부에서 수용이 안 돼서 법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컨대 응급조치 규정이라든가 피해 영상물에 대한 차단을, 빨리 막는 응급조치 규정이나 관할지 문제로 평통하기 때문에 이 사건 관할을 빨리 규정을 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규정,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고 법무부에서

발의가 안 됐거든요.

만일에 TF가 해산되지 않고 법무부가 이 법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부안으로 이것이 발의가 됐다면 지금의 딥페이크 사태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해결하는 데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지난 9월 4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사건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거든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과기부, 경찰청, 다양한 부처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정책관, 경찰청과 방심위에서는 국장급, 국방부에서는 차관 바로 아래 단장급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과장급이 왔습니다. 법무부가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 소위에 법무부차관님이 참석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은정 위원 그 당시에 법안소위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관련해서 제가 발의한, 당시 TF에서 권고한 내용들이 거의 제가 디지털성범죄에 관련한, 서지현법으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위장수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법무부차관님이 위장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신중 검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장수사 관련해서는 아첨법에 이미 위장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법무부 검사가 위장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찰에 위장수사 허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없이, 이거를 그냥 신중 검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소위에서 10월 20일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지난 법무부 TF에서 권고했던 이 많은 안들을 다시 검토를 하시고 위장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법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이 부분을 토론하려니까 좀 범위가 넓어지신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하시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제가 간사님하고 얘기한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오해하실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수사 역시 한두 건의 법률에서는 지금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막 도입을 주장하지만 또 다른,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수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조금 이따 발언 기회 드리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모처럼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고 좀 수준 높은 토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전 국민적 관심사인 딥페이크 관련 법에 대해서는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폭법,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14조의2인데요, 14조의2에 ‘알면서’를 넣으면 바로 위의 조항 14조하고 약간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조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조의2에 ‘알면서’를 넣으면, 아첨법도 ‘알면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통일이 안 된 조항이 성폭법 바로 위의 조항 14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안이 지금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5개 쟁점을 아직 추가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논의 할 때 14조의2에도 ‘알면서’를 넣어서 누군가 개정안을 발의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를 다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를 넣고 했을 때 복잡하냐, 오늘 처리가 안 되냐,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 의결된 걸 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넣어서, ‘알면서’를 넣어서 통과시키면 그리 복잡하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은 법의 체계상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발언하시고 그냥 그렇게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유상범 간사님 말씀하세요. 3분 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알면서’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또 모르는 사람이 그 딥페이크물을 받았을 때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그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받았는데 열어 보니까 딥페이크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봤다, 소지했다 이것 가지고 처벌받는 것, 이렇게 되면 무한한 피의자의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부당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벌 받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규정 자체는 ‘알면서’가 없어도 고의범인 경우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도 알면서 소지하고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적으로 그와 같은 문구를 넣어서 적어도,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법이라는 것은요 규정 형식의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의입니다. 그러면 그 고의 범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알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논리를 가지면 앞으로 모든 법체계, 지금까지 당연히 전제하고 있던 법률적인 체계에 다 ‘알면서’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오히려 자칫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는데 그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면서 문구를 넣은 것이 나중에 자칫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용어들의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의 지적이 일리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진우 위원 자구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위원장 정청래 조금만 이따 빨언 기회 드릴게요.

저도 법률용어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 용어라든가 어려운 한자라든가 이걸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은 법전문가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법이면 곤란합니다.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알면서’를 넣는 것이 오히려 법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조의2에는 ‘알면서’를 넣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방금 유상범 간사님이 말하는 법의 안정성 이 부분은 고려하고, 그래서 14조 2항에는 수미일관하게 추후에 개정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법원조직법 이것은 소위에서 한 대로 20년으로 그냥 합시다. 제가 봤을 때 20년으로 하든 15년으로 하든 큰 문제가 없고 일단 소위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0년으로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손을 끊)

○위원장 정청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같은 의견이면 반복이니까 일단 이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9항 범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의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4조의2제4항에 '알면서'를 추가하여 제2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잠깐…… 법무부장관 나오셨는데 뭐 하나 궁금한 것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성윤 위원님, 3분 정도만 짧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이성윤 위원** 법무부장관님, 보도 보셨지요? 김건희와 이종호 통화 내역,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려 40차례 통화를 했다는 걸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 뉴스만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렇게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을 안 해 보시고 국회에 오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수사 내용 내지는 그 기록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국회에 나오실 때는 보도를 좀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 보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왔습니다.

○이성윤 위원 보도 내용은 안 보셨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보도 내용이라는 게 전화를 뭐 누구랑 했다, 안 했다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도 수사를 해 보셨으니까, 주가조작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주가조작의 공모 내지는 실제 행위, 가담 행위 이것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이성윤 위원 주가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거래 심리분석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 심리분석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성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통화 내역을 보시면, 황희석 고발인 조사 전입니까, 후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거기에 언급하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 보도를 보셨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수사책임자로 있었어서 저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와서 저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상거래 심리분석인데 이것 지금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께서 장관님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덮는 데 일조한다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거래 심리분석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보면 2020년 9월 23일부터 집중적으로 김건희와 이종호가 연락을 했습니다. 25일은 김건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왜 9월 23일부터 이종호에게 연락했다고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알지 못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거래 심리분석이 이루어지면 검찰이 먼저 주가조작 분석을 의뢰하고 그것을 거래소에서 심리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분석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심리분석이 이루어지니까 범행이 들킬까 봐 이렇게 이종호에게 연락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당시에는 배제가 안 됐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다만 장관은……

○**이성윤 위원** 이 당시에는 총장이 지휘를 하고 있을 때예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장관은 배제된 상태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성윤 위원** 그 당시 대화 내용도 보도를 보면 주가조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래 내용에 관한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지휘 중이었고, 어떻게 김건희가 수사 상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수사에 대처하고 있었는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 총장이 이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김건희 사건 끝까지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장관께서는 ‘수사가 배제돼 있고 보고를 받지 않고 보도만 보았다’ 이런 말씀을 국회에 나와서 자주 하시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는 디올백을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말고 준 사람은 기소해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결국 수심위는 국민들에게 수심만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10년간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바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도 관련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40번의 통화 기록이 나왔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다른 전화를 통해서 통화한 것도 있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이종호하고 똑같습니다. 제2의 이종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호가호위했다 하는데 이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만약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를 검찰과 법무부장관께서 보호를 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 보세요. 검찰도 이종호 씨와 40여 번 통화하고 다른 전화로 통화했다는 것도 일찍 알고 있었지만 수사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쏟아질 증거인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렇게 가면요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큰코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대국민 공약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견해에 대해서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로서는 수사팀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을 믿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호 씨하고 10년간 연락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40번 이상 통화 기록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구체적인 부분에는 한 가지만 갖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이……

○**박지원 위원**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는 기억 못 한다 한 가지 가지고 2년 구형하지 않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생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3분 넣으세요, 저도.

장관님,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지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준 사람, 받은 사람……

○**법무부장관 박성재**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준 사람…… 대체적으로 그거지요.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 쪽은 다 배제하고 하니까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재영 목사 측에서는 나를 기소하라 이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소 의견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명품백을 나는 청탁용으로 줬다 하는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것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두 분의 수사심의회 구성원이 다 다르고 지금 수사심의회 결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가……

○**위원장 정청래**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없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참고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명분 삼아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어요?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

데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지금 차질이 생긴 거예요. 최재영 목사 쪽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어쩌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계획표를 세워 놨다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한 거지요. 기소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소해야 되는 게 맞지요. 최재영 목사의 생각도 자기 기소해서 처벌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쪽도 나도 기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박지원 위원님은 백담사 가셨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백담사 가시기 전에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외상값 있으면 외상값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회 결론이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사심의회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 잘 참고해서 사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해라, 아니다 기소해라 그러면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을 거면 무엇 하러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합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더 이상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실 것은 오늘 환노위와 복지위 장관들이 오전 일정밖에 좀 안 된다고 그립니다, 오전에 처리될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건으로 심사 시간이 늦어졌으므로 두 건은 오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노위, 복지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환노위만 먼저 들어옵니까?

환노위 먼저 들어오세요.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3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11시26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3항까지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하여 국가 등의 보조·지원사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43조의4에서 상습 체불사업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구체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체불사업주의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월평균보수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43조의7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법무부장관이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양 법률이 대응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법 시행 전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안 제109조와 관련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므로 형사상 소추 요건을 장관이 정하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입법과 형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도급사업 임금지급의무 위반,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의무 위반의 경우도 반의사불벌죄 배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절차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에서 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서는 이를 수정하지 않아 개정안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의2제7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등 공보에 고시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등이 도로 또는 교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도경찰청장 등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절차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 및 상수도조합을 수도사업 통합 주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안 제12조의3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도지사와 상수도조합 등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도 현행법 제5조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관련 규정을 법체계를 고려하여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뒤에 위치하도록 조문 위치를 조정하고 개정안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시장 등이 관할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함과 아울러 이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상수도조합이 일반수도사업자인 경우에도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 과정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하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있으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안 제52조의3제7항에서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해 원상복구 등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면서도 과징금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과징금 부과규정도 함께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부칙에 법률 시행 이후 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4항·제25항·제30항 및 제33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완섭 환경부장관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돼서 장관님 지금 현재 이게 법무부에서, 전문위원 보고에도 안 109조와 관련돼서 많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처 간의 이견이 다 해소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 내용이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또 법무부하고 상의해 봤는데 일단 여야 간에 합의가 됐고 또 저희 부처에서, 체불임금사업 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국민적 여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화실 전문위원,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보완 검토 의견이 나왔다고 돼 있고 검토의견서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대안에 대해서……

아, 다른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금 파악을 잘 못 했는데 그러면 109조에 관해서는 지금 법무부의 이견이 있는데 이것 해소가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법무부가 상습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했고요. 다만 입법 형식에 대해서 실무적인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부처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화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보충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좀 파악을 했습니까?

○**전문위원 이화실** 법무부에서도 약간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갖고 있으나 이 법이 지금 긴급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해서 대안을 내고 그것 가지

고 협의를 할 정도의 의견 내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전문위원 이화실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우려는 표시했지만 일단 그 노동부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법무부도 양해를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상습 임금체불이 액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기 때문에 법무부도 입법취지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부처에서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상습 체불업주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의 우려는 그런 거네요. 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을 해 왔는데 만일 이렇게 적용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체불임금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외려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 우려는 현장에서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주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렇습니다. 체불임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자체가 적용이 제외돼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명단 공개가 되기 전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명단 공개하고 나서는 체불사업주들은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니 결국은 그 점을 충분히 주지 시켜서 체불임금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적합한 개정이고 이 부분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합의해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법사위에서는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해서 오늘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처 간 합의가 됐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장관님, 합의가 된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부처 간에 이 취지에는 전체적으로 공감이 됐는데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적용을 제외하면……

○위원장 정청래 아니, 출국금지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법무부와 합의가 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완전히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청래 제가 다른 것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출국금지 그것은 합의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출국금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입법 형식에 실무적인 우려가 있다는 정도지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정도의 반대 의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합의가 된 것으로 오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한 3분 정도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체불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지금 잔액은 약 38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불임금 통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기소 이후는 검찰에 가서…… 근로감독관이 할 때는 체불임금 정산 안 하다가 검찰에 기소가 되면 그때 청산하는 경우인데 이 통계는 저희들한테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 중인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약 한 3800억 정도 있고요. 누계는 1조가 넘는데 그것은 다 청산이 된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유위니아만 해도 200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지금 청산하고 한 700억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영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고받기로는 대유위니아만 해도 2000억 정도 되고, 지금 대유위니아 회장이 사실은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체불임금 다 청산하겠습니다. 골프장 팔아서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청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사실은 병원비도 없고 아주 오래된 체불임금이라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체불임금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되나요? 10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체불임금이 있었나 사실 새삼 느꼈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께서 체불임금은 정확하게 다 받아 내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은 명확히 갖고 있으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해결돼야 되고. 그 사람이 보석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저 사람 나오나 보다, 되게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악독한 범죄だ라고 해서 절대로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법안을 준비를 하고 발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체불임금과 같은 악덕업자들이 보석을 신청할 때는 피해자,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가족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당연히 의견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도를 고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우리 부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첫 번째가 체불임금의 40%가 전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으로 외부에 적립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지금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철저히 받아 내시는 작업을 하시고 법으로도 하고 봄주는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 장관님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청문회 할 때도 그랬고 걱정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민족 관련한 의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32년생이신데 그러면 일제 시대 때 아버님의 국적이 일본이냐? 아니거든요.

○박준태 위원 법안 얘기하시지요, 법안 얘기.

○서영교 위원 예?

○박준태 위원 법안 얘기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장관님 저는 이런 일, 체불임금 관련해서 오늘 법안도 잘 가지고 오셨고 통과하는 데 의견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랏일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제 시대 때 우리의 국적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청래 시간을 좀 지켜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장관님 명확하게 국민 앞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다 그리고 장관님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 시대에 살았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 주시지요. 말씀 내용은 좋은데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면서, 국민의 민족 감정을 충분히 생각하고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갈 길이 멍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5항, 30항 및 3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9항까지, 제31항 및 3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체계·자구 심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용을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섭 장관님, 김문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 3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 3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0)
 -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 4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 4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 4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11시45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5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사회복지사업법(대안)은 벌칙 부과 대상을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8조제2항은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제1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명령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등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등 9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

처장님,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님 출석하셨지요?

임숙영 차장님 손 들어 보세요. 누구십니까?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예.

○위원장 정청래 보이시지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국회의 본회의 그리고 우리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부기관장의 대리 출석을 허가하는 것이 국회법 제121조제5항 규정의 취지이고 그간 국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질병관리청은 차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것을 회의 직전 9시 50분에 통고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했고 허락한 바도 없고 간사 간 협의가 된 바도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차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1번 항은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기관장이 나왔을 때 이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

퇴장하십시오. 다음에 청장님 나오시면 그 법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우리 법사위에서는 법안 심사 시 장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병관리청 차장은 아무런 통보가 없었어요. 회의 시작 10분 전에 대리 출석을 본인 스스로 한 거예요. 법사위에서는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그리고 기관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부처 소관의 정부안은 앞으로 심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래서, 과기부장관도 오늘 출석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과기부장관. 그런데 알아보니 과기부장관의 출장은 우리 법사위 회의가 잡히기 전에 출국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외로 과기부장관이 참석하지 못하고 차관이 대리 출석하는 것을 제가 허용을 했고 오늘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기관장, 장관들께서 만약에 해외 출장이 잡혀 있으면 사전에 법사위 회의 일정을 참고해서 스케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을 불가피하게 못 할 경우는 사전에 미리미리 법사위에 고지해서 그 부분을 허락을 득한 다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외 출장도 중요하지만 소관 부처 법률안 심사 통과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부처에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법사위 회의가 잡혀 있는 줄 알면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방금 질병관리청처럼 허락도 받지 않고 10분 전에 통보해서 청장 못 나오겠다, 차장이 대리하겠다 이렇게 국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법안 심사를 그날 당일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건 34항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없고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4조제2항제2호 나목,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들의 출입 제한 시간을 잘 준용해라, 준수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조의 제명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년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준수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위생관리업무와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4조의 제명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그러니까 위생관리의무가 아니라 준수사항 등으로 포괄적으로 변경을 하면 훨씬 조문의 내용도 자연스럽고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준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의무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등’에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 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님, 박동찬 전문위원.

거기서 의견 얘기하세요. 박준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동찬** 저희가 제목까지는 특별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도 동의하신다면 제목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을 해도 그렇게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부분은요 장관님, 저도 실제 이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악용이 된다는 거예요. 업주 사장은 청소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하고 ‘우리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주에게 돈을 뜯는다거나 이렇게 불이익을 가해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밥 주고 술 주고 돈 뜯기고 쳐벌받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한 달 먹고 막 이렇게 돼요, 치명적 으로.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면 함정 수사에 걸려들 듯이 함정 출입 이렇게 당해서 업주가 실제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 말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준태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저희가 그런데 조문을 보면, 첫 번째 1항 조문에 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생관리의무 등’이

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준수사항 등’ 하면 약간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부처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신 후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 의견을 장관님 들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목에 관한 사항인데 저는 이 조항의 여러 가지 항, 7항까지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개념인 ‘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수정하자고 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님, 큰 문제 없겠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부처에서 동의하신다면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그렇게 제호를 바꾼다면 저는 마지막에 ‘등’ 자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준수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등으로 하는 것은 여러 의무를 하면서 제1항에 있는 그 의무를 대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의무 등인데 이걸 7항, 8항까지 다 포괄해서 준수사항으로 하면 그냥 준수사항이지요. 거기에 ‘등’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한다면 4조를 준용하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관리의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이 10조 2호가 있고 제11조 1항 4호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4조 제명에 맞춰서 변경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11조 1항 4호 거기는 준수사항으로 바꿔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하니까 11조 1항 4호에 보면 거기는 준수사항으로 바꿔 놨어요, 또.

○위원장 정청래 그래요? 별문제 없는 거지요, 그러면?

○유상범 위원 10조 2호는 좀 확인해 보실래요?

○조배숙 위원 10조 2호는 지금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10조 2호도 보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서……

○조배숙 위원 거기는 바꿔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박동찬 거기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혹시 모르니까 11조 1항 4호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동찬 거기도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연동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연동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 2개 조항도 준수사항 맞춰 가지고 ‘공중위생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이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유상범 간사님이 제시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5항부터 38항까지, 42항부터 4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38항까지, 제42항부터 4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청 관련된 41항은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39항 및 4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홍 장관님, 오유경 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정무위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추궁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 급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426조의2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지급정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지급정지를 임의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재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된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26조의3제3항은 특정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조 제4항은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관련 사실을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바 의무조항인 제4항과의 논리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역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3분 정도로 하시지요.

○주진우 위원 저는 자구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무차입공매도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는 다 좋은데요. 지금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할 의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오히려 이게 나중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 사후에라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만큼은 자구를 조금 더 금융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거나, 대통령령 위임이 한 규정에 세 번씩 들어가는 걸 저는 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구상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법원행정처도 저랑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 의견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혹시 몇 조 부분……

○주진우 위원 안 445조제48호, 안 제180조의6제1항을 얘기한 겁니다. 1항과 2항, 180조의6제1항·2항.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지.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형사처벌 규정만큼은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위임입법할 때는 아주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건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법인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한 규정 자체에 대통령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규제하려고 하는 범위 그다음에 그 의무조차도 다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모든 것을, 형사처벌 규정을 그때그때 즉시즉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보장이 안 되고.

이 법안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법안인데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참고해 주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라는 점이 항상 문제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위임하다 보면 모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행령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중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지요?

○**주진우 위원** 저는 너무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 자체에 대상과 규제 대상 등등이 전부 다 위임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처벌 범위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처벌 규정의 위임 형태를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80조의6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진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항이지요?

○**주진우 위원** 제1항, 2항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위원** 3항까지.

○**위원장 정청래** 3항까지.

제가 1항 읽어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문구가 문제지요?

○**장동혁 위원** 1항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 가면 그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모든 게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포괄적이라는 취지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그게 포괄해야 되는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1항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조항을 잘 못 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2항은 ‘투자증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이것은 이번에 고친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받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게 고친 거예요. 3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1, 2, 3항이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것을 주진우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주진우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너무 포괄적 위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주진우 위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금융위원장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제 금융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먼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조치는 형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라는 점을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차입공매도가 위반되는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은. 그런데 거기도 대상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어떤 상장증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봤을 때 이 조항이, 그러니까 앞에 무차입공매도를 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증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무차입공매도가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내부 절차를 갖추라 하는 조항을 넣으면서 그 조항의 체계를 맞췄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대통령령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제재가 되는 거예요? 제재 범위가……

○김용민 위원 아니, 처벌 조항이 있어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는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확인하고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라 하는 의미입니다. 의미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위반에 대해서 제재 조치는 형사벌이 아니고 현재는 과태료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민 위원 아니, 처벌 조항이 있다니까요. 처벌 조항이 있어요, 445조에.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은 이 조항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 위반했을 때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그것 마찬가지지요.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180조의6 1항, 2항, 3항이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개별적인 조항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한 문장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면 대통령령으로 계속 규정을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냐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 2, 3항에 이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면 문제가 있겠지만 모법을 침해하지 않는 거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게 한 조문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방식은 피하는 조문 방식이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회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려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올리다 보니까 각 항에 대통령령이라는 표현이 좀 더 들어갔다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는 그냥 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 **주진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까지 동의하신다면……

○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

○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 **조배숙 위원** 그러면 180조의6 1항에 맨 처음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 이 대통령령을 받는 것은 상장증권입니까?

○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것은 방법이고요?

○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절차입니다.

○ **조배숙 위원** 방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령은 ‘이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법인이 되느냐, 법인을 특정하는 거지요, 그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범위가, 어차피 모든 주식거래를 하는 데를 다 하기는 사실 어렵다 보니까……

○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범위는 좀 탄력적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위임입니다.

○ **주진우 위원** 보통 매출액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그냥 정확히 정해 버리잖아요.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먼저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80조의6 2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좀 강화한 거지요. 그렇지요?

○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이게 일종의 승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2항에는 원래 대통령령이 없었고 금융위원회 고시였는데 이것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2항까지 대통령령이 하다 보니까 1, 2, 3항 자체가 다 대통령령이 되니까 좀 어색하다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2항을 좀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용민 위원님.

○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한 조항 안에 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요 형사처벌 규정도 있고 과태료 규정도 있다라고 하니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의 기준이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도 시가총액 1조 원 이하의 법인 중 혹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한선을, 큰 틀은 법에서 정해 주고 그다음에 위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이게 포괄위임이 아닌데 이것은 그 법인 자체의 전체를 대통령령으로 다 위임하니까 어느 법인이 해당되는지가 통째로 넘어가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금융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규제를 하려고 하는 단위나 법인의 규모가 있을 건데 그것의 개략적인 틀을 적어도 법에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저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장 김병환** 법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것은 정무위에서 사실은 설명도 드리고, 전체 공매도하는 부분의 한 90% 내외 정도는 커버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김용민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말씀하시는 법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법인이라기보다는 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라는 게 증권회사, 외국계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는 이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뭘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카테고리가 되는 게 국내 회사도 있고 외국 회사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딱 이렇게 하나로 또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우려가 없도록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그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한 번 정하면 일관되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게 포괄위임으로 보여져서 말씀하시는 개략적인 범위는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대략적인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 범위는 정해 줘야지 포괄위임이 아니지 대통령령으로 통째로 다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이잖아요. 이게 처벌 조항이 없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처벌 조항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권회사, 해외 증권회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자산 규모를 잡을지가, 외국은 얼마, 국내는 얼마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내부 통제 기준을 내부적으로 두라 하는 법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하는 법인이 있으면 그것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따지면 법에 앞에 붙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고려해야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위원장 정청래 우리 법사위에서는 제가 위원장하면서 가급적 타 상위 법안의 내용은 손대지 않는다, 합의돼서 처리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만 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하는 내용은 내용을 손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이게 체계·자구, 체계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김용민 위원 체계에 맞는 거지요.

○곽규택 위원 체계 같은데요.

○김용민 위원 이것은 체계지요, 체계.

○위원장 정청래 왜냐하면 체계·자구 심사만 고치는 경우가 있고 체계·자구 심사를 고치면 내용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체계·자구 심사이면서 내용까지 손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다른 게……

○위원장 정청래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들어 주세요.

지금 교육부장관도 오전 중에 이것을 마쳐야 된답니다, 오후 2시에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오전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체계·자구 심사뿐만 아니라 내용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늘 처리하지 말고 다음번에 처리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계류시키고 다음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동안……

○서영교 위원 그래도 괜찮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다음번이 너무 늦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정청래 한 달 안에 할 겁니다.

○서영교 위원 빨리해 달라고 하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오늘 처리를 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령 부분을……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시지 뭘 이것을……

○김용민 위원 아니면 오후에 괜찮으시면 오후에 잠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서영교 위원 오후로 가서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님, 오후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오후에는 정무위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그 일정에 따라서……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그 일정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4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28)

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출석 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8항 및 4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오셨는데 속기록이라도 남기고 가시지요.

오늘 처리했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신속하게 법안 처리해 주신 법사위원회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방위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농해수위, 과방위, 외통위, 여가위, 문체위 순으로 진행하고 오전에 보류됐던 정무위 소관 47항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심사하겠습니다.

8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8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1)

8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9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9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9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9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93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것임을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선원의 근로 관계에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태아검진 시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선원의 처우개선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의 ‘실질소득’이란 표현은 그 의미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소득’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제88항, 제8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86항, 제91항, 제92항, 제93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송명달 해양수산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 출장으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항상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는데 정시에 출발한 법사위 열차에 제 시간에 맞춰 승차한 위원님은 이성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성적이 안 좋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반성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제 시간에 출석 안 한 분들은 제 시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토론은 3분으로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길게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3분으로.

○유상범 위원 86항에 수산업·어촌 공익사업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견 해소는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기재부와 이견 협의 완료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지금 이 법안 내용은 어항 인근의 어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규모 어가 직불 대상에서 혈행 제외됐는데 그것도 포함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농업 부분까지 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공업 지역에는 농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예산 소요는 미발생하거나 미미할 것으로 해서 기재부와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데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추가로 혜택을 보는 어업인이 한 3265명, 연간 추가 예산이 한 16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기재부가 이 정도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액으로도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유상범 위원 법이라는 것이 항상 하다 보면 혜택을 보는 그룹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는데 이것처럼 사실 배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인 어업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법 개정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된 것 같고.

이견 해소가 됐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시나리오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앞서 과기부 소관 법안 심사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해수부 소관 정부안인 제91항부터 93항 까지의 법률안은 오늘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할 생각이었는데 법사위 회의 공지 전에 출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오늘은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사위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할 목적이거나 또는 국회 법사위를 가볍게 여겨서 그냥 출장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안 심사를 그날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불가피하게 일정 조정이 안 돼서 법사위 때 출석 못 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양해를 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대체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서 소관 법안을 통과할 때 결국은 최고책임자인 장관이 와서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각 장관들이 위낙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특히 해외출장의 기회가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출장이라든가 또 그런 경우 해외에서 하는 일정을 국내 일정 때문에 해외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용이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취지에 받들어서 적어도 법사위 일정이 확인되면 또 타 부처에서도 법사위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 한 3일 전에는 통보가 된다면 그 정도는 또 저희가 각 행정 부처의 자율성이라든가 각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융통성은 좀 발휘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한 것이 아니라 일정을 확인을 해서 해외출장 일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데 불가피하게 못 바꿀 경우는 미리 고지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오늘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10분 전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법상 사전에 고지를 하고 협력을 맡아야 되는 게 국회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장은 불출석하고 차장이 대리출석하는 것을 10분 전에 그냥 통보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청 소관 41항은 오늘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나 지금 해수부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일정을 고지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잡혀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한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점에서 유상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 못 한 법사위 일정이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오늘 질병관리청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법사위에 협력을 맡고 대리출석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매우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의결정족수가 됐습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지원 위원 제가 농식품장관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3분간 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지원 위원 오늘 보도에 의하면 벼멸구에 대해서는 농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결정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게 말이 안 돼요. 현장에 가 보세요. 저도 도시에 살다가 농촌 지역구로 가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해남은 물론 전라북도, 전도 어디 할 것 없이 폭염에 벼멸구가…… 벼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여기에다 농약을 하니까 폭우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경제지주 대표가 현장 시찰을 와서 하시는 말씀이 농약을 하면 벼 추수를

못 한대요. 15일 이상 있어야 농약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폭우에 다 가라앉았어요. 이것을 보지도 않고 벼멸구는 농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탁상공론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피해 벼를 매입하겠다는 발표는 했고요, 위원님. 재해, 폭염에 의한 해충인지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폭우로 곡창지대가 다 쓰러졌어요. 벼도 쓰러졌고, 멸구 먹어 가지고 시커멓게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추 같은 것은, 저도 처음 봤어요. 식재를 했는데 쓸려 내려가니까, 이제 배추는 다시 심지를 못한대요, 모종도 없고 시기도 늦고. 그래서 그대로 밭을, 농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농업재해지역 선포나 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이번 일요일 날 해남에 갈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배추를 포함해서 유실된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겨울 배추의 경우는 지금 식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해남에 오면 저도 만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농업재해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용의가 없느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제가 한덕수 총리한테 전화했어요.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과 제도는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사후에 발생하고 나서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도를 보니까 가을 폭염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됐어요. 그래서 단풍까지 영향을 미쳐서 단풍도 3~5일 정도 늦게 듣다는 거고 단풍이 늦게 들면 나무의 생태에도, 생육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과 제도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느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정부의 대책은 적시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부처 장관들의 기민한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남에 가시면 박지원 위원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부터 9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및 제91항부터 제9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부터 90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5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5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54.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5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5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제출)

5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6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6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6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6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6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위원장 정청래 다음 의사일정 51항부터 6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67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위한 신청 내용이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71조의2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적극행정 면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은 자연인인 사람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56항, 66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1항, 52항, 53항, 54항, 57항, 58항, 60항, 61항, 62항, 63항, 64항, 65항, 67항 등 1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과기부 이창윤 1차관과 강도현 2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 대행,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유상임 과기부장관은 공무 출장으로 인해 차관님들이 대리 출석하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56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가 답변을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2차관 강도현입니다.

○유상범 위원 강 차관님, 이것 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다 해소가 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것 자체가 보험업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이 돼야 되는 그런 법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10월 25일 날 보험업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도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들과 맞춰서 시행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처 시행일자도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시행일자도 맞춘 것…… 맞춰야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전문위원, 시행일자 맞춰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원회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도 없고 그러면 의결할 순서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출석하지 않아서 의결을 못 할 상황입니다.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토론, 의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때까지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속개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잘못으로 시간이 지연된 점은 법사위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54항까지, 57항·58항, 60항에서 65항, 6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56항·59항 및 6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윤·강도현 차관님, 김태규 부위원장님, 유국희 위원장님, 윤영빈 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정청래** 오전에 보류했던 정무위 소관 47항을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기관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 토론하신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만들어 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 오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내용 수정까지 막 너무 돼 있어 가지고.

금융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보세요. 여기 지금 법사위 안과 대체토론 수정안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너무 많이 손대서 또 왔어요. 이렇게 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것이 훼손이 돼요, 취지가.

○**유상범 위원** 2항, 3항은 아무 문제가 없고 1항에서 주의 의무를 별도로 명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정무위에서만 동의하면 오늘 처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른 위원님들은요?

○**김용민 위원**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유상범 위원** 정무위에서만 확인해서 저쪽에서 동의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이게 물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경계가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요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막 내용까지 손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온 거니까요. 저희가 손댄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온 거니까 다릅니다. 정부안을 가지고 온 거니까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이게 정무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정무위에서 의결된 것의 범위를 넘어서 정부가 다시 막 손대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 얘기기는. 그러면 정무위에서 의결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마구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아까 조금 의문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포괄적으로 뭐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김용민 위원님의 지적이었잖아요. 저도 일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이 너무 이 법의 취지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느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경제 관련된 문제라 법률로 결정했을 경우에, 이게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을 법률로 하면 만약에 그것을 바꾸려면 계속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법 개정을. 그런데 법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또 간단한 절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드는데, 혹시라도 이것과 비슷한 경우에, 지금 사실 저희들로서는 어떤 포괄적이라도 뭔가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 법과 관련된 다른 비슷한 법안에 이런 비슷한 사안임에도 그냥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한 그런 법률안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법 조문, 법안에 따라서 아마 다양하게 규정이 돼 있을 거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조의6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증권’ 이 부분은 같은 법 내에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증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증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쓴 거고요.

○**조배숙 위원** 같은 법 안에 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같은 법 안에요. 그런 거고.

제가 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 주신 것 중에 3항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일종의 제한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조문을 좀 많이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범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조문에 보시면 제한되는 범인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수정안의 180조의6 1항 2호를 보시면 전산설비 구축하고 정보 제공하게 하는 것은 순보유잔고 규모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렇게 조금 더 한정을 하고요. 그 외에 2항에서 ‘투자중개업자는 범인으로부터’ 할 때 이 범인은 사실 모든 범인입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굳이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범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조문이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해진 겁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조문을 만들다 보니까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제가 가졌던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금융위원장님, 이것 오늘 꼭 해야 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게 사실은 지금 전산설비를 증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불확실성을 좀 빨리, 정무위에서도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정무위 안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헌 소지거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제 또 위원님들 지적을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를 해 본 안이 지금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의결을 해 주시든 오늘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는 대체로 수정안이라고 지금 만들어 오셨는데 180조의6에 1·2·3, 1·2 이렇게 돼 있는데 1·2가 거의 새로 추가된 거예요, 문구가 비슷한 걸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정무위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작은 문구라 할지라도 오타라든가 문법적 오류라든가 아니면 법적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금 금융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또 이 법을 통과시킨 정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내용상 큰 변동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즉석에서 수정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무위 의견을 들어 보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금융위원장님이 계속 대기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님은 이석하시고요. 이것은 다음번에 최우선적으로 정무위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만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시급한 법안인 것은 맞거든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시급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고 중요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정무위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주진우 위원** 저는 원안 의견도, 원안으로 가결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했던 것은 그냥 자구를 보다 보니까 대통령령이 지금 세 번 반복되고 혹시 위헌 소지가

있을까 봐 한 번 걸러 주려고 한 것인데……

○위원장 정청래 그렇다면 원안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오늘 해도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위원 아까 금융위원장이 원안으로 하시는 게, 왜냐하면 금융위원장 아까 설명이……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그냥 원안으로 해요, 정무위에서 올라온 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 원안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고쳐 가지고, 지금 즉석에서. 그러면 원안대로 그냥 하지요.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아까 외국 법인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김용민 위원 저도 잠깐만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저도 지금 수정안이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도 훨씬 맞게 잘 수정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짧은 시간 내에 잘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체계·자구 심사할 때 자구 심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내용이나 취지를 다 바꾸는 정도 수준은 어렵다고 보지만 체계와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과 시행령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법을 체계에 맞춰서 고칠 때는 일정 부분 내용이 고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무위에서 하려고 했던 A라는 것을 우리가 A'로 고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A라는 것을 가능한 한 A에 최대한 맞춰서 문구를 바꾸고 체계에 맞춰서 부합하게 만든 수정안이라고 저는 지금 보여져서 우리가 법을 그래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했는데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을 알면서도 더 나은 안을 우리가 수정하지 않고 기존 문제가 여전히 제기됐던 안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시다면, 기준에는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필요하면 간사님 통해서 하거나 해서 정무위 의견을 묻고 그래서 그날 가능한 처리를 했던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정무위 의견을 듣고 가능한 이 수정안대로 오늘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오전에 금융위원장 출석했고 다시 기다렸다가 오후에 왔는데 또다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정무위에 의견을 물으면 정무위 위원장한테 물어서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들도 있고 전체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의견을 묻는데 1명한테 물어본다고 오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한테 위임했는데 이렇게까지 수정할 줄 몰랐다’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법사위에서 그런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보세요. 180조의6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1·2 이게 새롭게 체계가 들어갔다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내용 여부를 떠나서 정무위에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유상범 위원 그러면 내용은 차이가 없는 거니까 김용민 위원께서 양보하셔 가지고

일단 정부에서 지금 이 법안의 시급성을 얘기하니까 원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가십니다, 양보하시고, 오전 중에는 내가 양보했잖아.

○**김용민 위원** 문제가 빤히 보이는데 또 그렇게 가기는 좀 그렇기는 하네요.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께 묻겠어요.

이게 항상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법사위에서 너무 갑질한다 이런 의견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무위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늦어져도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묻고 정무위에서 오케이하면 그때 다음번에 제일 먼저 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그게 끓어 두는 게 더……

제가 의견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정청래** 예.

○**서영교 위원** 법사위를 해 봤지만 여기 와서 끓어 두는 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다시 그쪽에서 개정을 하거나 이러고 저희가 이 자체 공매도라든지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무위에 있는 위원님들과 전부 다 전문가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을 다음으로 넘기는 것—다른 상임위에서 온 것—그게 더 체계·자구 바꾸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김용민 위원님 말씀을 또 못 들었는데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에 문제 제기하신 분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진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본 것은 대통령령이 반복되니까 혹시 나중에 위헌에 걸릴까 봐 걱정을 했던 건데요. 이게 위임이 아예 금지돼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위임할 수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게 외국 법인들이니까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에 위임한 어떤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 규정대로 가도, 물론 김용민 위원님 지적처럼 두 번째 게 좀 더 다듬어진 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규율 범위가 같고 정무위 입장에서도 이것을 똑같게 과연 볼 것이냐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갔으면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다, 정무위 의견까지 다 듣고 다음에 하자 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정무위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이 조금 늦지만 그게 좀 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중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56)**

(14시39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 외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영호 통일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통일부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짧게 답변하기 쉬운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이 심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위원장 정청래 연일 불안하게 하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북한으로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우리도 북한으로 풍선 날리기 막 하고 전단지 뿌리고 이런 것 했는데 이것은 양쪽에서 서로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전단을 우리는 안 할 테니 당신들도 오물풍선 날리지 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통일부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선 북한이 오물풍선을 뿌리는 것이 우리 민간 단체들이 전단을 뿌리기 때문이다라고 북한이 주장하지만 북한이 그런 오물풍선을 뿌리는 이유는 아마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관련해서 그 전단 관련 조항은 위헌으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물풍선이 계속 옴으로 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공안전법을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해서 전단

단체들이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도 외통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대북전단, 빼라 이렇게 날려 보내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는 민간이 하지만 북한은 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민간이 관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우리 쪽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통일부장관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마 국민적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1분만 추가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대표로 했으니 넘어가시면 안 될까?

○서영교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서영교 위원 접경만이 아니라 그 풍선이 국회에도 떨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회에도 왔고 용산 주변에도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만이 아니에요. 접경지역만이 아니니까 정말 빠르게 협력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가 어떻게 들어 있을지 알겠습니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게 통일부장관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곳곳에 다 오고 동대문에도 오고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부장관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45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 의사일정 제94항부터 96항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안들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가위 법안들은 앞서 처리한 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 관련 법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상 숙려기간 규정은 가급적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고 시급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생략을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96항까지의 법률안은 딥페이크 그리고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으로서 여야가 합의하였고 그 처리의 시급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안건들을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9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94항부터 9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96항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의3의 조제목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촬영물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제7조의4에서 이를 다시 '불법촬영물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법문의 표현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9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의사일정 95항과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자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승원 위원 그런데 저희 법안1소위에서 심의한 것 중에 이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정보제공업자한테 삭제, 접속 차단 이런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법보다는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도 높고,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정보제공업자한테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뭔가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속칭 응급조치라 그래서 저희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기존의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그것은 좀 이상하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그런 절차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참석을 했는데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뒤에 심의관님 와 계시네요, 오늘도.

저희가 아무튼 응급조치라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너무 급속도로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최대한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차단시키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아첨법이 예전 기준 방식대로 하는 게 저는 수긍이 안 되거든요.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경무관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가위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불법 성착취물을 발견했을 때 빨리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거기서도 안이, 일응 사업자에게 빨리 통보하면 먼저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19년 11월에 방통위, 방심위 그다음에 경찰, 여가부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뭘 협의를 했냐면 일단은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권은 방통위, 방심위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경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빨리 제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심위에게 빨리 보내면 방심위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빨리 삭제 요구를—그쪽이 권한자니까요—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가부도 마찬가지로 여가부는 상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삭제의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방심위로 보내서 삭제 요청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방심위 쪽에서 개별적으로 업자에게 통보하는,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돼 있느냐 하면 방심위에서 각 업자들에게 삭제할 수 있는 루트 하나 그다음에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아예 기본적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는 통신망을 갖고 있는 SKT나 KT 같은 통신사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망 하나 이것을 아예 방심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4만 건 정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수사하다가 바로 저희 경찰하고 방심위하고 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날아갑니다. 그러

면 방심위는 온 내용이 경찰에서 불법촬영물로 습득한 내용이니까 바로 그 업자들에게 ‘야, 너희들 삭제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삭제를 하다가 이것 삭제해야 될 내용인가 아닌가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것에 대한 유권해석자는 방심위입니다. 그러니까 방심위에다 재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은 받았는데 이것 삭제해야 될 건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시 확인해 주세요’하게 되면 방심위가 그때 다시 심의를 해서 확실한 의사결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던지는 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방심위로 바로 보내니까 방심위가 일단 삭제하라고 보내 놓고 자기네가 다시 한번 법에 규정된 대로 위원들이 심의 의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거기가 신속의결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모여서 공개 회의를 해야 되지만 급속한 경우에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문자를 날려서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 이것 삭제하는 게 맞아’라고 결정을 하고 있다가 실제 요청받은 자가 삭제를 안 하면 바로 그것을 찾아내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일견 업자에게 보내는 것보다 더 빠르다, 아니면 적어도 차이가 없다 그런 게 토의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정이 돼서 여가부 통과한 안처럼 방심위에다가 보내고 방심위가 지금처럼 신속하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심의관이라고 그랬어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말을 길게 하시도록 제가 그냥 지켜봤는데……

방심위로 보내서 방심위에서 신속하게 다시 보내는 제도가 있어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방심위가 해당 업자들 그다음에 통신사와 자기네가 원래 규정에 의해서 삭제 요구 또는 차단 요구……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않는 경우를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방심위나 방통위에서 답해야 할 사안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삭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차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경우에 또는 IP 주소가 뭐 뭐 점, 뭐 뭐 점, 뭐 뭐 점이라고 해서 차단 요청을 해 놨는데 업체에서 사이트 주소의 뒷번호를 살짝 바꾸면 또 그게 차단이 안 되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고요. 어제도 언론 보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텔레그램에서 이런 불법촬영물 유통하고 하는 것은 협조하겠다, 외국 기관이지만 이렇게 답변을 받았더라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답변을 받은 주체는 어디예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방심위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심위입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방심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텔레그램에 요청하면 텔레그램이 방심위로 보내고 수사할 내용은 또 경찰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 입장에서는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응하겠다는 거고요. 그와 별개로 그러면 그 안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 실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방심위에 보낼 수는 없는 내용이고 경찰하고 별도로 협의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미적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삭제해 주세요’,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그럴 수 있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일종의 범죄정보 그것은 방심위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수사 경찰에 바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심위도 심의할 게 무지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제때 못 해. 그래서 오히려 삭제 요청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하고 범죄정보도 기왕 경찰에서 받으니까 받고 이렇게 경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 어때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자에게 직접 할 수도 있는 한데요. 그 업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바로 삭제하겠지만 삭제에 의구심을 갖거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시 유권해석기관인 방심위에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하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가 방심위로 보내더라도 방심위 실시간 보내고 있고 저희가 업자에 보냈는데 지금은 또다시 업자들하고 저희가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과 별개로……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해 본 바는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 서로 부처끼리 나중에는 책임 떠넘기기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경향은 불 보듯 뻔하네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김승원 위원 저도 좀만 더 확인 좀……

○위원장 정청래 아니, 박은정 위원 한번 먼저 하시고요.

○박은정 위원 지금 문제 되는 게 빨리 삭제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성폭법 개정안 딥페이크 차단 6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응급조치 있습니다, 경찰이 방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소위에서 심사하실 때 응급조치 규정을 마련을 해 주시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기고요. 지금 방심위 가서 빨리 삭제하고……

하루 만에, 이를 만에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이것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은. 그래서 온 국가가 다 달려들어 가지고 삭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피해자의 삶이 무너져요. 그리고 피해자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해요, 이것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전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은 하지만 앞으로 1소위에서 법안 심사하실

때 경찰의 응급조치, 신고가 되면서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방심위 거치지 않고 하는 그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저는 각 기관에서, 방심위에서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에서도 삭제 요청할 수 있고, 저는 신속하게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기관별로 책임 소재를 어디로 할 거냐 이것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것은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게 이 법안에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또 하기는 그렇고 일단 통과시키고 개정안을 또 빠르게 내고 이렇게 그냥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기서 내용까지 어떻게 손대겠어요.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아무튼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찰, 방심위 다 공통으로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고 또 심의관님도 어제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피해자한테는 1시간이 정말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응급조치를 통한, 예컨대 여기 삭제도 있지만 접속 차단도 있지 않습니까? 퍼져 나가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빨리해 달라는 것이 지금 피해자들의 그런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성폭력방지법 거기 응급조치와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이, 예컨대 신고된 성착취물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라든가 불법 촬영물임을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것은, 그렇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김승원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확인했으면 그것을 방심위를 통해서 가지 말고 바로 정보제공자한테 삭제를 하든 접속 차단을 시키든 퍼져 나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하고 정보제공업자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그 법안을 우리가 성폭력방지법에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경찰 쪽에서는 좀 이견이 있지만, 지금 현 체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시가 급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아동·청소년법, 그것보다 더 심각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 협의체를 유지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24시간 안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성폭력방지법의 개정안 입법취지와도 다르고 또 법률 간에 벌써 불균형, 불일치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가부에서 이게 어떻게 통과돼서 법사위로 왔는가. 그래서 민주당 특위안도 경찰에 의한 즉각적인 차단,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위안인데 이것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요. 고민이 많이 생기네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심의관한테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우리가 문제지요, 저분들은 법이 만들어진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김승원 위원 아니, 심의관께서 계속 협의체 의견을 줘 가지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니, 그 협의체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토론하시는데……

○유상범 위원 내용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다 만다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가부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일단 하고 또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자는 거예요, 시급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 봤자 그것은 마른 하늘에 주먹질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 관점에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세요.

○서영교 위원 제가 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가위에서 질의를 해 볼 때 방심위가 텔레에 연락을 했더니, 어쨌든 몇 번 연락 했는데 텔레그램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삭제해 준다고. 그런데 그게 얼마큼 삭제 할지 아직 모르지요, 어떤 반응이 왔고. 경찰이 제가 확인한 걸로는 수도 없이 텔레에 연락을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양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경찰이 할 수 있게 하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이유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저에게도 빠르게 요청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해 주게 하고 그리고 또 방심위가 해야 될 역할들을 방심위가 해 줘야 되는데 경찰이 다 못 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들어 보고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법이 왔지만 저희는 바로 경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자가 이야기할 때 바로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찰이 그만큼 숫자가 많지도 않더라고요, 일을 할 때. 제가 행안위원장 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러면 이 일을 보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빨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오늘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과시키고 이걸 빨리 저희 법안에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워 내거나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분 한다고 해서 1분 내에 마친 분은 없습니다. 진짜 1분 하십시오.

○장경태 위원 저도 21대에서 과방위와 여가위하면서 보면 어찌 됐건 협의체 구성이 경찰이 영상물 심의·제재 권한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갖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권한을 경찰보다는 여가부의 센터나, 어찌 되었건 신속 심의 권한이 방심위에 있기는 하지만, 방심위도 2년 전에 증원을 했습니다만 항상 인력 증원 요구하고 있거든요, 방심위도.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은 협의체가, 이제 방심위가 심의 의결권은 갖고 여가부에서 요

청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여가부가 바로 방침위에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 상담 수준밖에 없잖아요, 여가부 산하에.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제대로 없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삭제 지원……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삭제나 접속 차단도 사실 통신사나 CP사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확하게 1분을 지켜 주셨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4항 및 9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9항부터 85항까지의 문체위 소관 법률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문체부장관이 3시 30분경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알려 왔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문체부장관이 도착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고 그동안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요구의 건을 간사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7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7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7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7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7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7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 8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문체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부터 8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85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나라와 관광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된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전담여행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전담여행사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도 전담여행사의 지정 유효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종전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8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휴·폐업 사실 통보의무자를 모든 체육시설업자로 확대하려는 취지이므로 통보의무의 주체를 모든 체육시설업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므로 지식재산권의 등록·출원을 지원하도록 자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규정한 안 제10조제2항의 내용이 자문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력체제 구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안 제21조 조세감면 규정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실익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2항까지, 제75항, 제76항, 제78항부터 제81항까지와 제8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69항, 제73항, 제74항 및 제85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그리고 최용천 국가유산청장님 출석 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간사님.

3분으로 하시지요.

○**김승원 위원** 의사일정 83항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이요, 이것 제정법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장관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행안부랑 기재부 의견도 잘 해소됐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법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승원 위원**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법 관련해서 저희가 요새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 피해자 차단 또 삭제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현안인데요. 사실은 불법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퍼져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런 경우에 불법 음란 사이트에 의해서 성착취물, 불법영상물, 허위영상물이 실리거나 게시되거나 퍼져 나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지금 어떤 조치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딥페이크 문제는 AI 기술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요 이것은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법이 너무 강해지면 또 기술 발전을 막는다고 해서 그런 이견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문제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청소년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 유무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요새는 불법 게임 사이트에 불법 성인물로 국민들을, 이용자를 유혹해서 그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사실 게임 사이트와 불법 성인 사이트가 같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만약에 불법 성착취물이라든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올라오면 예컨대 아마 경찰 그리고 게임관리위원회인가요, 기관이? 여러 군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피해자분들은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삭제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거라서 그것이 좀 더 잘 작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까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가위라든가 법사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정보제공업자, 보니까 정식으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불법 사이트 통해서 확산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 주셔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도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김승원 위원 삭제라든가 차단 요청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국민들께 안심시켜 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게임은 사실은 그 게임업체들이民間에서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이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도록 하여간 저희가 철저하게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 (손을 훑)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잠깐 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관련이 있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20년 전에 제정법으로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 당시에 게임산업 그러면 게임중독만 연상이 돼서 학부모단체에서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제가 설득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합의 조정해서 통과시킨 법안이었는데 제도라는 것은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상 셧다운제를 그래서 도입을 했습니다. 셧다운제도 그것도 찬반이 갈리기는 했지만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에 제가 계속 했던 것이 이 게임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이고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스포츠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 체육 종목으로 정식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무슨 얘기냐, 게임이 무슨, 이스포츠가 체육이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후에 우리가 늦어지면서 중국은 2002년도에 이스포츠를 국가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했고 결국 지금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메달 종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이스포츠의 아이콘, 상징이 임요한 선수—테란의 황제—지금은 폐이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산업진흥법을 제가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하고 했지만 결국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이스포츠를 키워야 되는 측면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그때 반대했어요, 저도 정부 여당 소속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 때 문체위 1년 하면서 그때 국감 때 했던 것을 제가 틀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다 후회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지금 딥페이크 문제도 딥페이크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되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산업적 피해가 있을 부분

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혜롭게 균형을 맞춰 가면서 잘,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되 또 진흥·육성할 것은 진흥·육성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간단하게 자구에 관한 것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그 안의 제10조의3제2항을 보면요. 여기 노트북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우’라는 말이 자꾸 반복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등등등등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이러는데 ‘경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재정지원’ 하고서 팔호를 쳐 놨잖아요. 지원을 한다는 건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이런 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문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뒤의 경우는 뺏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용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예, 그것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좀 건의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정청래 예.

○조배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아까 오전 중에,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중에 ‘허가를 득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득하고가 일본 어조거든요. ‘허가를 받고’ 그래서……

○위원장 정청래 반성합니다. 허가를 받고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회사에서 무슨 회의 할 때도 문건을 보면 허가를 득하고 이게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문제인데, 아무튼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21대 국회 때 일제 잔재 어려운 법적 용어를 일제 정리한 것을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허락을 득하고는 제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허락을 받고 가 맞고.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말할 때 ‘본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립니다. ‘본인은’ 이것은 일제시대 때 ‘본관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님들한테는 ‘본 의원은’, ‘본인은’ 이렇게 안 쓰는 게 좋고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맞다 권고한 사람으로서 ‘허락을 득하고’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허락을 받고’가 맞습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 위원장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73항, 74항 및 8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몇 항이었지요? 76항?

○조배숙 위원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76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경우’를 ‘때’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공연법 10조의3제2항 맨 마지막의 ‘경우’를……

○위원장 정청래 예, 그러니까 의사일정 75항이지요, 이게? 76항입니까? 여기 있구나.
됐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76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의사일정 76항입니다.

○조배숙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그것은 지금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또 정부
측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72항까지, 75항부터 77……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72항까지, 75항, 77항부터 8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76항, 방금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76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그리면 오전에 심사 보류됐던 의사일정 제3항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55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배부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신 것을 대폭 반영해서……

○**유상범 위원** 대폭?

○**위원장 정청래** 대폭입니다.

유상범 간사님, 잠깐……

(위원장, 간사와 협의)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9개 피감기관의 기관장, 부서장 등 기관증인 376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여야가 요청한 사항을 취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수회에 걸친 청문회에 불러 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질문하고 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입법 청원 청문회, 탄핵 청문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치적 정쟁을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불렀고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진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쟁만을 위한 법사위라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 우리가 지켜 왔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는 기관의 지난 시간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국정감사로 인한 기관증인만 해도 자그마치 168명에 부서장만 208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불러 놓고 그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은 사안들 또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증인을 채택해서 과연 우리가 예정하고 있던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40인 중에서 공통 증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증인 신청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국정감사도 마음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정감사의 경우에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게 기관의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집중해서 감사를 진행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모든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많은 증인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논쟁을 벌이고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았던 많은 부분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과연 법사위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상임위나 하는 말까지 듣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국정감사가 갖고 있는 본래 취지에 맞게 증인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과연 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차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올바름을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총선 개입 또 공천 개입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은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관련된 증인 또 참고인을 최대한 채택하고자 애써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의혹을 가지고 덮을 것만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왜 그런 건지 사정에 대해서는 한번 떳떳하게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유상범 위원 내가 하다 못 한 말이 있어서 그 얘기만 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알았어요. 유상범 간사님 그러면 1분 추가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웃음)

이것 밀월 관계라는 소리 나오겠구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는 것은 결국은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돼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특히 일반증인·참고인의 경우에는 여야 간 사실상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왔던 관행이 있고 또 그 관행이 저는 타당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면 추가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의견을 좁힐 수 있게 10월 2일 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국민의힘 측 유상범 간사님이 요구한 것은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이 많이 돼서 ‘이러이러한 증인들은 뺏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합의가 안 된 것은 맞지만 내용적으로 반영은 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0월 2일 날 검사 탄핵 청문회 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7일 날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7일이기 때문에 5일밖에 안 되고 7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일 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곽규택 위원님.

○송석준 위원 제가 먼저 손 들었는데요?

○**곽규택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곽규택 위원** 국정감사 중인 명단을 일단 봤는데요.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정치적인 쟁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국정감사에 있어서 증인을 부르기 시작하면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쟁점적인 사건들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은 눈에 보듯이 뻔한 거여서 과연 국정감사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사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한 사람들, 검사들 다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 중에서 특히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은 탄핵까지 해 가지고 탄핵 청문회 하면서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국정감사에 또 부르겠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쟁용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안 나왔잖아요.

○**곽규택 위원** 이렇게 본다면 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안 부릅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그래도 중립을 지켜 주고 그런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감에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직무에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고려 때문에 안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수사를 한 검사들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똑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판사하고 검사하고 사이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분명히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건 수사한 검사들 부른다는 것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들을 다 부른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감사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향후에 감사위원들이 내부적인 회의를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업무상에 정치적 부담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가부에 대한 논쟁은 많았지만 그래도 수차례 탄핵 청문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 가지고 중복해서 불러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내용도 뻔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거의 인권 탄압 아닙니까? 한 번 나왔던 증인들은 다 좀 제외를 하고 또 감사위원 같은 경우나 검사나,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불러야 마땅한 그런 증인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국방부장관이라든지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넣는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증인들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이신 거지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39명을 채택하셨는데 꼭 필요한 증인은 불러야 되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증인·참고인 불러 놓으면 실제는 발언 기회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결국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서 꼭 핵심 증인을 위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은 여야가 합의해서 서로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을 비례적으로 서로 선택하는 게 기준의 관례인데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이 요구한 증인들은 채택이 안 되고 겹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또 일부 빼 달라고…… 일부 반영해 줬으니까 합의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께서 요구하신 증인 중에 겹치지 않은 부분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 정쟁적으로…… 우리가 국민적 관점에서, 관심사에 대해서 제대로 필요한 증인·참고인이 아니고 단순히 정쟁을 위한 증인·참고인들이 많이 눈에 띠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좀 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법원 기관증인 열다섯 분의 채택이 여기 지금 안건에 올라와 있는데 논란이 됐던 해병대사령관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해병대사령관도 군사법원 기관증인에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우리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정쟁의, 특히 안보 최일선에 서 있는 해병대가 정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날 이분을 불러서 한번 점검 좀 했으면 싶어서 양당 간사님께서 해병대사령관도 군사법원 기관증인으로 같이 추가로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시지요. 어차피 평행선을 탈리고 있는데요. 같은 말씀일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특별한 다른 얘기 있습니까?

토론 동의는 김용민·박지원 위원님 등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 제가 증인 명단을 보니까 이창수 검사장 같은 경우는 기관증인이면서 대전고검에서 하는 것의 증인으로 또 소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된 게 아닌가…… 그리고 중앙지검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 충분히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10월 2일 날 하면 일주일을 못 채우지만 국정감사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3주에 걸쳐서 하니까 그 뒤에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충분히 증인을 논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국정감사에서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디까지나 국정감사인데 지금 여기 결정된 증인들은 탄핵이나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그리고 또 이것은 국정감사니까 청문회하고는 조금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다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증인도 일방의 증인도 필요하지만 또 여당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좀 수용을 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시는 게 실체적인 진실도 발견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안

을 파악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준태 위원 아니요, 토론하겠습니다. 발언 주십시오. 발언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계속 동어반복 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발언 주시지요.

○박준태 위원 발언 주세요. 3분 발언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하실 거면 이것 중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토론하고 다 표결합시다. 우리가 명단에 대해서 지금 표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 중 기관 중인 376명, 일반 중인의 경우 1번부터 84번까지 총 84명, 참고인의 경우 115번부터 130번까지 총 16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또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되 감사 모두에 인사말씀과 감사 마무리에 종합답변을 했던 기존 운영 방식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주 차는 7일 전에 의결해야 하는 조항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만 2주 차는 10월 2일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혹시 꼭 빼야 되거나 꼭 추가해야 되거나 하는 것은 그때 다시 필요하면 출석 요구 의결을 간사님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84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장시호		10. 8.(화) 법무부	
김영철	검사	10. 18.(금)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25.(금) 종합감사	
김옥숙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10. 8.(화) 법무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10. 11.(금) 군사법원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 21.(월) 대검찰청 10. 25.(금) 종합감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0. 11.(금) 군사법원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 25.(금) 종합감사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10. 11.(금) 군사법원 10. 21.(월) 대검찰청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10. 11.(금) 군사법원	
박정훈	해병대 대령	10. 25.(금) 종합감사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10. 11.(금) 군사법원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염보현	군 검사		
유균혜	국방부 고위공무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제56보병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10. 11.(금) 군사법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형래	국가안보실 행정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행정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최동식			
조병노	경찰		
송호중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택용	사업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10. 17.(목) 대구고등검찰청 등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10. 21.(월) 대검찰청 10. 25.(금) 종합감사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 17.(목) 대구고등검찰청 등 10. 21.(월) 대검찰청	
김태영	21Gram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조은석			
김인회			
이미현			
이남구			
김영신			
유병호			
이영인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		
안병준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정영균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건축사 대표		

감사원 감사위원

10. 15.(화) 감사원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김용현	국방부장관		
홍정상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제1과장		
김승예	다누림건설 대표	10. 15.(화) 감사원	
최종원	다누림건설 이사	10. 25.(금) 종합감사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10. 17.(목) 대전고등검찰청 등	
한연규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10. 21.(월) 대검찰청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10. 25.(금) 종합감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10. 18.(금) 서울고등검찰청 등	
박상용	검사	10. 25.(금) 종합감사	
김진용	국가정보원 주재관		
김국훈	큐브나인마이스 대표		
김경목	검사		
정선희	유락복지관장		
안소연	안부수 딸		
김형수	전 쌍방울 미래전략본부장		
장석환	쌍방울 재무이사		
박주성	검사		
김윤미	장시호 친구		
최재원	클린앤소프트 이사	10. 18.(금) 서울고등검찰청 등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오하은	애월연어 사장		
정원경	아태평화교류협회 전무		
이바레니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손건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10. 21.(월) 대검찰청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조연경	대통령실 행정관		
송윤상	검사		
김건희	대통령 부인	10. 21.(월) 대검찰청	
최은순	대통령 장모	10. 25.(금) 종합감사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16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10. 8.(화) 법무부 10. 25.(금) 종합감사	
김동욱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무도실무관	10. 8.(화) 법무부	
권용석	전주대학교 교수	10. 11.(금) 헌법재판소	
김경호	변호사	10. 11.(금) 군사법원	
김정민	변호사	10. 11.(금) 군사법원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규현	변호사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 25.(금) 종합감사	
장인수	기자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 21.(월) 대검찰청 10. 25.(금) 종합감사	
이명수	기자	10. 1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 21.(월) 대검찰청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10. 15.(화) 감사원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10. 15.(화) 감사원 10. 25.(금) 종합감사	
봉지욱	기자	10. 18.(금) 서울고등검찰청 등	
하승수	변호사		
박기택	변호사	10. 21.(월) 대검찰청	
심인보	기자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10. 21.(월) 대검찰청 10. 25.(금) 종합감사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진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첨가 위원(1인)

전현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창윤

제2차관 강도현

통일부

장관 김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환경부

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